2015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8월 27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0호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등 실시(안)>

(1) 통화정책국장이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2015년 하반 기 중 시장안정 P-CBO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현재 회사채시장이 P-CBO를 통해 비우량 회사채 차환발행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들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국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취약업종 대기업에 대한 신용경계감 증대 등이 회사채시장에 불안요인으로 가세하고 있어 P-CBO 지원대상 일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회사채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수행 필요성,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행의 P-CBO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P-CBO 지원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모니터링 결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P-CBO가 차환지원 대상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비우량 회사채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위원은 P-CBO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 환발행 지원 기업들에 요구된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P-CBO 지원대상 기업들이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P-CBO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라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자금지원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P-CBO 지원은 일부 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 채시장 전반의 시스템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최 근의 회사채시장 불안요인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P-CBO 지원과는 별도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 며,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을 보다 면밀 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당행의 금융안정 책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 지원의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2013년 7월에 수립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의해 발행

된 P-CBO 규모와 지원대상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당초 6조 4천억원의 P-CBO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5조 5천억원이 발행되었으며 지원대상은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대상 기 업 5개, 일부 건설사 및 우량 중소기업들이라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이번 대책의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P-CBO 운영기간이 당초 2014년말에서 지난해에 2015년말로 연장되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2013년 7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시 당초 지원대상이 2014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였던 만큼 현재까지 P-CBO 실제 발행금액이 지원한도를 하회하더라도 추가지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회사채시장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컸던 2013년 7월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증권의 대출담보 인정비율을 통상보다 높은 100%로 하는데 따른 이유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담보인정비율은 금통위 결정사항이므로 금통위가 별도로 의결할 수 있고 무위험채권인 당행 발행 통안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이번 지원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P-CBO 발행이 예상보다 늦어져 운영기간이 당초 계획 보다 연장되기는 하였지만, 당초 취지에 따라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이번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이번 안건이 회사채차환 발행 지원 프로그램의 일관성, 시장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방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문우식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의결사항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등 실시(안)(생략)